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의안 번호	26034
----------	-------

동의연월일 : 2023. 12. 21.

동 의 자 : 박주민 의원 등 167인

주 문

2023년 12월 21일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21515호)을 제21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함.

동의이유

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등 183인)은 2023년 4월 20일에 발의되었으나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어, 6월 29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박광온·배진교·용혜인·강성희의원 등 183인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제출하고,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2023. 6. 30.)에서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음.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는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쳐 8월 3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기한 내에
심사하지 않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11월 29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됨.

나. 이 법률안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
에서 다중 인파밀집에 의해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참사
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10·29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부터 후속 조치까지 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
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
복을 위한 간병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함임.

다. 2022년 12월부터 1월까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했으나 일부
증인들의 불출석, 출석 증인들의 위증과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제
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함. 이에 이태원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요청
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 의원 공동으로 2023년 4월 20일 특별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6월 30
일 184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함. 이후 행정
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이만희 의원)의 심사거부로 안
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3차례 심의를 거쳐 8월 31일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함. 어렵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이후에도 여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특검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음.

라. 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부터 후속조치에 이르는 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간병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하여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21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함.